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.

발 의 자 : 전진숙 · 서영석 · 남인순
오세희 · 손 술 · 임미애
김남희 · 서삼석 · 이수진
문금주 · 이개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,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.

그런데 대형 재난·사고 및 감염병의 유행 등은 발생 직후의 인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동반하여 피해 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·관찰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

체적·정신적 치료·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 등).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”로, “필요한 자료”를 “다음 각 호의 자료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는 건강영향조사에 한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”를 “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그 결과”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,

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이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·재활 지원 및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
3. 「암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
4. 「통계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, 질병 및 사인(死因) 등에 관한 자료
5.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
6. 「소방기본법」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구급활동 및 이송 현황에 관한 자료
7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환자의 내원 및 응급의료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
8. 진료과목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질환별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

9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⑦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 공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8장(제5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벌칙

제58조(벌칙) 제2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竝科)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 또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의2(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8조의2(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) ① (현행과 같음)
	② 보건의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② 보건의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<u><신설></u>	③ -----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·재활 지원 및 관련 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여야 한다. ④ 보건의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건 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-----
-----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-----

-----.

⑥ -----
-----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-----

---다음 각 호의 자료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는 건강영향조사에 한한다)-----

-----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

<u><신 설></u>	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 한 자료
<u><신 설></u>	3. 「암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
<u><신 설></u>	4. 「통계법」 제3조제4호에 따 른 통계자료 중 직업, 질병 및 사인(死因) 등에 관한 자 료
<u><신 설></u>	5.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에 따 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
<u><신 설></u>	6. 「소방기본법」, 「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구급활동 및 이송 현황 에 관한 자료
<u><신 설></u>	7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환자의 내원 및 응 급의료 제공 현황에 관한 자 료
<u><신 설></u>	8. 진료과목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질환별 발생 현 황에 관한 자료
<u><신 설></u>	9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

<신 설>

<신 설>

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⑦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 공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⑨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그 결과-----

-----.

제8장 벌칙

제58조(벌칙) 제2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

	<u>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(並科)할 수 있다.</u>
--	---